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5.11.)

파인만 코어셀렉트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펀드코드: 56898)

|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부도 등의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파인만 코어셀렉트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인만 코어셀렉트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성장성이 뛰어난 주식에 대한 적극적 발굴을 통해 신성장 산업(신기술 또는 해외시장 진출)과 기존 산업내 유망기업(글로벌 환경 변화의 수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산업분석에 입각한 Top Down(하향식방식)과 Bottom Up approach (상향식방식)을 병행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장상황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우량주를 편입하고 시장 및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편입합니다. | |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 보수 | 동종 유형 총보수 | 총 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 1.565% 2.165% | 0.900% 1.500% | 1.390% 1.590% | 1.5650% 2.1671% | 259 222 | 421 437 | 590 645 | 943 1,052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등 포함,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보수체감형(CDSC)클래스의 경우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정보는 1년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기간경과에 따른 판매보수인하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3)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 |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 수익률) | | | 23.05.12 ~ 24.05.11 | 22.05.12 ~ 24.05.11 | 21.05.12 ~ 24.05.11 | 19.05.12 ~ 24.05.11 | |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형(C5) (%) | 2010-10-25 | 12.08 | 3.15 | -5.26 | 5.25 | 2.98 | | | | | | | | | | | | | |
| | 비교지수(%) | 2010-10-25 | 9.47 | 2.57 | -5.27 | 5.28 | -5.15 | | | |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2010-10-25 | 13.61 | 14.92 | 14.12 | 20.13 | 17.56 | | | | | | | | | | | | | |
| (주1) 비교지수 : KOSPI | | | | | | | | | | | | | | | | | | | | |
|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주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전문 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 | | 운용 경력 년수 (년) | | | | |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 | | 운용 규모 | 운용역 | 운용사 | | | | | | | | | | | | | | |
| <책임운용인력>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전문인력 | | 박진환 | 1965 | 책임운용 전문인력 | 18 | 511 | N/A | N/A | 27.33 | 8.74 | 14.42 | | | | | | | | | |
|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I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p>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3.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4.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5.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6.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이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 |
|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 부도 등의 위험 |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매입방법 |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환매방법 |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 |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
| 파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④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 | | |
| 집합투자 업자 | 파인만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03-9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 | | | |
| 모집기간 | 효력 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3조좌 | | |
| 효력 발생일 | 2024년 07월 11일 |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기타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eynman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eynmanasset.com)